



제 417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 확대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26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9
2. 뉴미디어 조정사건 통계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중재 등 심의 대상에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¹⁾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u>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u> 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u>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u> ----- ----- ----- -----.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검토의견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소셜미디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²⁾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언론수용자가 증가³⁾하면서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뉴미디어를 통한 언론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유튜브 채널 조정신청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기준)
조정신청 건수	4건	2건	8건	14건	35건	19건

주: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을 단독으로 ‘유튜브’로 한정한 사건만을 통계한 것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그러나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뉴미디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침해 구제 대상인 언론보도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상의 충돌의 여지가 있어 온 바,

개정안은 언론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도를 조정대상으로 명시하여 현행법 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2) 뉴미디어는 전자 공학 기술이나 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칭하는 개념임.

3) 「2023 언론수용자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의 매체별 뉴스이용률에 따르면, TV의 경우 2018년 85.4%에서 2023년 76.2%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같은 기간 6.7%에서 25.1%로 상승하였음.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법의 언론 중재 조정대상에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조정대상 판단과 조정실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보고서」를 마련함으로써 2022년 8월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 등을 언론 중재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판단

구분	제공 주체	내용 및 형식		조정대상 여부
1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등 채널(계정)에 동일하게 게시		O
2유형		본 매체에 게재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등 채널(계정)에 만 게시	보도	O
			보도 아님	X
3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게시		유보
4유형		다양한 정보를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게시		X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게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⁴⁾을 내린 바 있음.

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82 정정보도청구 등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⁵⁾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정보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제공하는 정보가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가 ‘보도의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담당 소관이 결정되는데, 현행법은 보도⁶⁾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보도 정보’와 ‘보도 외의 정보’를 구분할 기준이 없어 이용자 혼란 및 방심위와의 업무 혼선 등이 예상되므로,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⁷⁾는 개정안에 따른 대상 정보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모호할 경우, 방심위의 통신심의·분쟁조정 업무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의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중 제공주체가 ‘언론’이며, 대상 또한 ‘보도’로 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반면,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는 발

6) 참고로, 「방송법」 제2조제24호는 보도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방송내용의 공공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임.

생한 피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에는 보도의 범위에 따른 각 기관의 업무 소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의 뉴미디어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의 취지가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를 통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해 구제수단의 다양성 및 가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업무범위 중복 허용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⁸⁾.

기타 체계자구 사항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를 법 제2조제12호⁹⁾에 정의된 ‘언론사’로 수정하고, ‘보도’가 언론중재법 정의상 ‘언론’¹⁰⁾의 행위이고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뉴스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위치를 매개에서 보도로 이동하고 ‘보도를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정정·반론·추후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데에 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정보의 삭제·차단 조치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분쟁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관계 부처 및 협회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24.8.2.)	•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나, '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언론사'라는 모호한 용어를 수정할 필요(수정수용)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보도 정보'와 '보도 외의 정보'를 구분할 기준이 없어 이용자 혼란 및 방심위와의 업무 혼선 등이 예상되므로,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 (수정안)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 언론사가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7.29.)	•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도 '보도를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정의한 바 없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그 목적이 보도 일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보도'는 언론중재법 정의상 '언론'의 행위이며,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은 '매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해석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득하게 될 수도 있어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8.2.)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방심위 통신심의 또는 분쟁조정업무와 중복 및 이용자 혼선 야기 등 대국민 권익 보호 실효성 약화 우려로 신중 검토 필요

참고 2

뉴미디어 조정사건 통계

○ 뉴미디어(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2023년)

대상 매체	콘텐츠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원 보도 매개	19	-	1	-	2	12	-	3	1	57.1
	자체 제작	16	1	-	-	10	-	-	5	-	37.5
	소 계	35	1	1	-	12	12	-	8	1	43.5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원 보도 매개	280	133	16	-	53	19	4	33	22	70.8
	자체 제작	12	-	-	-	5	4	-	3	-	37.5
	소 계	292	133	16	-	58	23	4	36	22	69.8
합 계		327	134	17	-	70	35	4	44	23	67.7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